

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90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10월 14일

발 의 자: 김상훈, 문영민, 홍성룡,
권영희, 이승미, 오현정,
이준형, 최선, 최정순,
이정인, 김춘례 의원(11명)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에 따라 동물복지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“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-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1991년 「동물보호법」 제정 이후 2012년 전부개정을 통해 세계수준의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.

- 최근 들어, 동물복지 및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, 실제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와 열악한 사육환경 등 동물사육자의 의무이행 등 준수상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바, 교육·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- 서울수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인간 중심의 소극적 동물관리에서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받는 동물복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동물복지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지만, 현실 속 동물복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및 동물원 동물 등 동물복지정책 방향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 개선, 동물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,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 확산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‘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-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1991년 「동물보호법」 제정 이후 2012년 전부개정을 통해 세계수준의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.
-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74만 가구로 국내 전체 가구의 약 30%에 달하고 있으며, 이에 맞춰 동물복지 및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.
- 그러나 실제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와 열악한 사육환경 등 동물 사육자의 의무이행 등 준수상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, 교육·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있다.
- 또한, 동물원의 경우 단순히 다양한 동물을 전시하는 공간, 동물 쇼를 위한 인위적인 훈련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가하는 오락공간에서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.
- 따라서 서울시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인간 중심의 소극적 동물관리에서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받는 동물복지정책으로 방향을

전환하고 있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지만, 현실 속 동물복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.

- 이에 반려동물, 유기동물 및 사육동물 등에 대한 동물복지정책 방향의 원활한 추진 및 제도 개선, 동물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,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 확산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‘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’ 구성을 결의한다.

2020. 10. 14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